

2022. 04. 25(월). 10:00  
제2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

# 검 토 보 고 서

< 안건명 >

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  
전 문 위 원

#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박은경 의원 등 9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2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

## 2. 제안이유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함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다.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- 라. 지원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입법예고 결과(2022. 4. 14. ~ 4. 20.) : **“의견있음”**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제6조(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) 및 별표			1. 제6조(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) 4항에서 보면 “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지급액,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·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” 라고 하고 있는데 별표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기준(제5조제3항 관련)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닌지요?  2. 별표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기준(제5조제3항 관련)에서 보면 지급한도액이 1회 한도액인지 아니면 1년에서 총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인지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.	
별표 남양주시 재난 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기준				

○ 전문위원 의견 : **“미반영”**

- 제6조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별표는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닌지요? 의견에 대하여는 제6조제4항의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지급액,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·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**“시행규칙”**으로 제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.

- 별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서 한도액의 불명확한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, 별표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게는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지급

하고,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개인 또는 사업장별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라고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어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시의 적절하게 지급해야 할 사항으로 특별히 1회 또는 1년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하고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에는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5조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8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 사회·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시 시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 저촉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2022년 4월 22일  
산업건설전문위원 이명구

**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**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 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